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7.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7. 23

다. 상 정 일 자 : 2002. 7. 23

(제105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농산과장 안 상 순

나. 제안사유

-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법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지함.

다. 주요내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로 함 (안 제1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로 함
- 심의회 위원수 35인을 30인으로 함 (안 제2조)
-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을 “농림사업시행지침”으로 함 (안 제3조)
-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정심의회”로 함 (안 1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47호로 농업농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99년도 2월 5일 삭제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농정심의회로 하는등 절차상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1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로 하고 “제67조”를 “제40조”로 하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35인”을 “30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세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 이내

제3조 제8호중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을 “농림사업시행지침”으로 한다.

제15조중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정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u>농어촌발전심의회</u>(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제40조----- -----농정심의회----- -----</p>
<p>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35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③ (생략)</p> <p>1. 관계기관의 장 2인이내 2. 생산단체의 장 10인이내 3. <u>지역농림어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등의 대표 7인이상 14인이내</u> 4. <u>농수산계 고등학교 교사 및 농수산계 대학교수 3인 이내</u> 5. <u>농림어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이내</u></p>	<p>제2조(구성) ① ----- -----30인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1. ----- 2. ----- 3. <u>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이내</u> 4. <u>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이내</u> 5. ----- -----</p>
<p>제3조(기능) (생략)</p> <p>1.~7. (생략)</p> <p>8. <u>농림수산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한사업 계획 및 예산 요구</u></p> <p>9. (생략)</p>	<p>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p> <p>1.~7. (현행과 같음)</p> <p>8. <u>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u></p> <p>9.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 ① 읍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읍면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p> <p>②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은 다음 각호의 자중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서 9인 이내로 한다.</p> <p>1.~4. (생략)</p> <p>③ (생략)</p> <p>④ 운영은 군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에 준하여 운영하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읍면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5조(읍면 농정심의회) ① ----- ----- 읍면 농정심의회를 -----</p> <p>② 읍면 농정심의회 ----- ----- 농정심의회----- -----</p> <p>1.~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군농정심의회 의 ----- ----- ----- -----</p>